



제1751호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9 0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토 지 정 보 과 2
- 공 고 제 2 9 2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식 품 위 생 과 4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제 2 9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6
예정 공고
- 공 고 제 2 9 6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8
- 공 고 제 2 9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산동 소로2-2호선)사업 공사완료 도 시 재 생 과 10
공고
- 공 고 제 3 0 1 호 2023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공고 총 무 과 11
- 공 고 제 3 0 5 호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 도 로 과 34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공 고 제 3 0 6 호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도 로 과 38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공 고 제 3 1 0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 실 4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 시

- 고 시 제 1 8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치기준 도 시 재 생 과 51
변경고시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9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 구 만수동 산1-31번지 일원에서 시행된 『산밀말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3. 2. 7.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산밀말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토지소재지	종전 지적공부 (폐쇄)		확정 지적공부(시행)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남동구 만수동	1	29,545	1	29,547.2	지번조서 별첨

4.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2. (15일간)
5. 시 행 일 : 2023. 2. 7.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8.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 종전토지 지번별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등록번호	주소
1	만수동	산1-31	임야	29,545.0	남동구		
합계	1필지			29,545.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 29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2. 7.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1. (15일간)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4-0199420	(주)에스앤비	(주)에스앤비 대표 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20, 503호 (간석동, 탑프라자투)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 청문일시 : 2023. 2. 22.(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유통식품팀 ☎032-453-2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9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2. 22.
3.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4. 공 고 기 간 : 2023. 2. 8. ~ 2023. 2. 21. (14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이용업	066	태양이발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47번길 1(간석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2-06-20	2023-02-22
이용업	2007-00002	모범이발소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24번길 9(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2-06-01	2023-02-22
미용업	2021-165	윤지네일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7번길 8, 대명르미엘 1층 102호(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2-07-11	2023-02-22
미용업	2016-55	리소헤어 123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16, 5층 502호(구월동, 세동빌딩)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1-11-12	2023-02-22
미용업	2010-90	제이엔미(J&美) 스킨케어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9-1 주공14단지 A상가 204호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19-11-29	2023-02-22
미용업	미용312	S뷰티	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7(구월동, 2층일부)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19-11-27	2023-02-22
미용업	2019-196	더미샵에스테틱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71, 301호일부호(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19-12-10	2023-02-22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미용업	2021-167	옴은스킨앤바디 테라피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6, 신화빌딩 203호(서창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2-09-28	2023-02-22
미용업	2016-96	네일 더 맑음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56-1, 1동 1층 101호(구월동,차르돔오피스텔)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2-07-31	2023-02-22
미용업	2019-74	네일공작소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12, 힐캐슬프라자 1층 148호(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1-10-26	2023-02-22
미용업	2020-96	신평헤어스튜디오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8, 상가동 1층 102호 (남촌동, 남촌2차풍림아파트)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1-05-10	2023-02-22
건물위생 관리업	2016-13	(주)케이엠경호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18, 1층 128호 (구월동,퍼스트하임프라자)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0-06-22	2023-02-22

6. 고 지 사 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 2. 2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453-2634

2023. 2. 8.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9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2. 7.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1.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22-0260025	주식회사 청정국	주식회사 청정국 대표 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36, 리치타워 2층 203호 일부호(서창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3)

- 청문일시 : 2023. 2. 22.(금) 11:00부터 12: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유통식품팀 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2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산동 소로2-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2-140호(2022.12.15.)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산동 소로2-2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9.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2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산동 소2-2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규모

- B=8.0m, L=90.0m, A=715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01.18.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3 - 301호

2023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공고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행복한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23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2. 8.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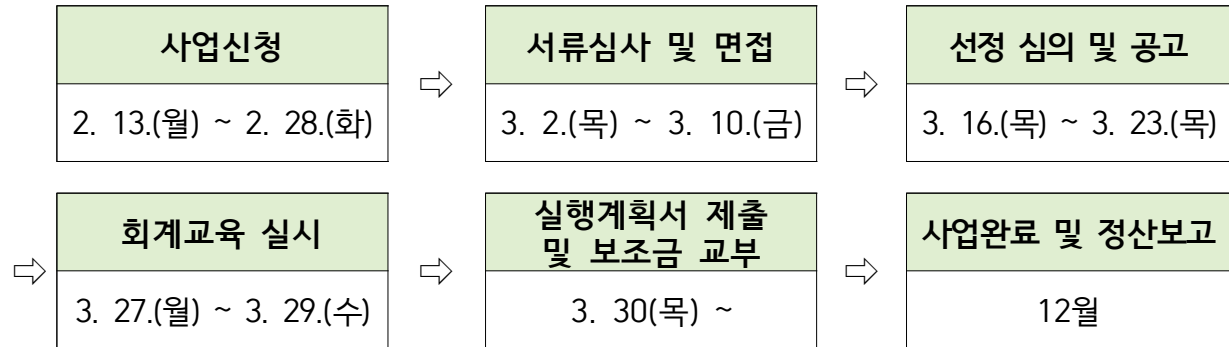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마을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고있는 모임구성원인 주민이 직접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마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코자 함

- 사 업 명 : 2023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 28.(화) 18:00 까지
- 심사기간 : 2023. 3. 2.(목) ~ 3. 23.(목) ※ 면접 일정 별도 통보
- 사업기간 : 2023. 3월 ~ 11월
- 사업지역 : 남동구 관내 (신청모임 거주 또는 주생활권 지역)
- 참여대상 :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마을활동가
 - 주민은 남동구 거주민 및 사업자에 한함
 - 한 사람이 다수의 모임에 중복 참여 불가

-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은 사업 참여 가능(남동구 거주자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④ 사업신청 확인
- 총사업비 : 123,000천원
- 주요일정



- 사업설명회 : 2023. 2. 14.(화)
- 사전컨설팅 : 2023. 2. 9.(목) ~ 2. 20.(월) / 사전예약 필수

2 공모분야 (신청자격 및 보조금 규모)

※ 동일모임은 1개 분야의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안)

신청 유형	신청 자격 및 사업내용	보조금
마을공동체 형성 (신규 형성단계)	◦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 신규 형성 ~ 3년 이내 활동 모임·단체 대상	1개 모임당 200만원 이내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 활동단계)	◦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 3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 있는 모임·단체 대상	1개 모임당 400만원 이내
마을을 쓰다	◦ 마을 취재, 마을 기록사업 ◦ 마을책자 발간	1개 모임당 200만원 이내
마을가꾸기	◦ 환경정비·경관개선 분야 특화 사업 ◦ 사전 및 현장 컨설팅 필수	1개 모임당 1,000만원 이내
마을활동가	◦ 공모사업 선정 마을공동체 지원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 - 선정인원 : 3명 ◦ 관내 거주자 ◦ 3년이상 마을만들기 활동 경력자 * 필수교육 이수 의무 * 월별 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	월 60만원/1인

☐ 사업유형 예시

사업유형	사업내용 예시
교육	- 방과 후 교실, 북카페 운영, 재능 기부(멘토링) -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의 평생학습 필요계층의 교육 사업 - <u>자기계발 위주의 지나친 강의 프로그램은 지양함</u>
여성친화	-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친화	- 아동의 놀 권리, 참여권 보장 프로그램 운영 - 공공육아, 공공밥상, 육아 품앗이, 공동보육 등 마을돌봄 프로그램
안전	- 마을 안전지도, 안내도 제작 - 야간 청소년 안전 귀가도우미, 마을순찰대 운영 - 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우선 환경 만들기
경제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나눔장터 등
친환경	- 자원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발굴, 쓰레기 감량 등 - 녹지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 등
문화	- 마을 축제, 동네사진전, 전통문화 보존, 마을탐방 코스 발굴 등 - 마을 미디어(소식지, 신문 등) 운영 - 마을 역사·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한 마을 이야기책 발간 및 영상물 제작)
기타	- 주민 모임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등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활동
마을가꾸기 (신설)	- 원도심 마을 환경(경관) 개선사업 - 주거 취약계층 밀집으로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빌라의 파손 및 노후 공동현관(건물 주출입구를 말함) 보수·교체 등 마을 안전 개선사업 등

※ 사업유형별 예시 이외의 사업도 가능

3 선정 제외대상

- 본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 일회성 축제, 단순 캠페인, 단순 복지 활동(소외계층에 대한 일방적 물품 전달 등), 단순 교육강좌, 단순 반복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계가 적은 사업신청의 경우
- 본 공모사업 취지와는 달리 기존 단체나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 오던 사업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모임 구성원의 단순 친목도모 등의 사적 목적사업의 신청일 경우
- 사실상 특정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모임)의 사업신청의 경우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 취지의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 28.(화) 18:00까지
- 접 수 처 : 남동구청 5층 총무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남동구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32-453-2205~6)
 - ⇒ 방문 접수 후 이메일(yonghyeong@korea.kr)을 통해 접수서류(hwp 파일) 별도 송부
 - ⇒ 이메일 접수만으로는 접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 메일 제목 “202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동체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식(첨부) 확인 후 해당사업별 신청서 제출
 - 마을공동체 형성/활동 : 서식 1·2·3·4·8 제출
 - 마을을 쓰다 : 서식 1·2·3·4·8 제출
 - 마을가꾸기 : 서식 1·2·3·4·8 제출
 - 마을활동가 : 서식 5·6·7·8, 기타 증빙자료 제출

5 사업비 편성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시)

가. 기본원칙

< 관련근거 >

-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기본원칙 >

- *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실질 소요예산 수립 원칙)
- * 사업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이 없는 항목은 선정 시 감액)
- * 직접적인 활동수행과 관련한 임직원의 활동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
- * 사업비는 모임의 마을공동체 활동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 강사료, 단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행사비는 본연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소규모 행사규모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유의사항) 모임에서 개최해 오던 대규모 행사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행사 비용 일부에 대해 보조금 사용은 불가함
- * 보조금은 개인 또는 모임의 재산형성에 대한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소모성 물품이 아닌 고가물품(노트북 등) 편성 불가
- * 모든 거래는 모임 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에게 지출 불가함 (물품구입, 재료구입, 강사료 등) - 여비, 활동비는 해당사항 아님
- * 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확정된 보조금과 자부담은 계획

당시의 집행비율을 사업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나. 예산편성 기준

지출항목		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
비목	세부비목	
인 건 비	강사비	• 주 강 사 1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이내 : 150,000원 • 보조강사 1시간 이내 : 50,000원, 2시간 이내 : 80,000원 * 강사비로만 구성된 사업 불가,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도서지역(강화,옹진에 한함)의 경우 별도의 교통실비 집행 가능 * 2시간 초과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집행
	원고비	• 교재, 책자 편찬용 원고 * 강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0,000원 / 파워포인트 1면당 5,000원 - 글씨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300단어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원고료 미지급
	유급봉사자 보 상 (외부단순 인건비)	• 사업실행(행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 시간당 10,000원 * 지급 한도액 : 50,000원 / 1인, 1일 5인 이하
	회의 및 심사비	• 사업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외부 전문가 수당 • 2시간 이내 : 70,000원 / 1인, 2시간 초과 : 100,000원 / 1인 * 지급 한도액 100,000원 / 1인 *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와 중복지급 불가
사 업 진 행 비	홍보비	• 사업 실행에 필요한 홍보 비용 •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 동영상 등 제작을 위한 비용 * 홍보영상 1회만 가능, 현수막은 5만원 이내 * 집행한도액 : 사업비 총액의 15% 이내
	공연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연 비용 (소규모 공연초청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행사가 원칙이며, 외부 공연은 자제하고 지역 인적자원 활용 권장 - 지역 주민공연 연계시 유급봉사자로 보상 가능 * 집행한도액 :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지출항목		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
비목	세부비목	
	단 기 임차비	- 사업실행을 위한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의 단기간(1일 이내) 임차비용 * 집행한도액 :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 (실비 정산)
사 업 진 행 비	소모성 물 품 구입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재료) 구입 비용 * 사업추진과 관련없는 사무비용, 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집행 불가 * 자산취득성 경비집행 불가
	교육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 - 사업실행을 위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 및 교재 등의 구입비용 -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 (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집행 불가 * 사업실행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단순 도서 비축(재산형성)을 위한 도서 구입 비용은 집행 불가 * 집행한도액 : 총사업비의 20% 이내
	계좌이체 송 금 수 수 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 * 강사비, 공연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경우에만 계좌이체 가능 * 정산시 집행잔액, 예금이자 반납 이체수수료는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로 집행 불가
	활동비 (사업추진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주활동 회원(임원 등)의 활동 경비 * 여비, 다과비, 자료구입 등 실제 지출 비용 - 사업실행에 필요한 예상하지 못했던 소액성 지출 필요시 사용 가능 * 집행 한도액 : 총 사업비의 15% 이내 /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불가
운 영 비	숙박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의 타 시·도의 행사참여, 방문 등을 위한 숙박 비용 (1박 이내) * 시외 활동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1박까지 지출 가능 * 단순 관광개념의 숙박비 편성 불가 (공동체 탐방의 경우 반드시 교육 포함) * 집행한도액 : 최대 5만원 (1인 1박 기준)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 또는 관계자 식비와 다과비(회의, 행사 등) * (편성단가) 다과비 4,000원 이하 / 1인, 식비 8,000원 이하 / 1인 * 집행한도액 : 총사업비의 15% 이내

지출항목		적용 내용 및 기준 금액
비목	세부비목	
		* 돌봄사업 등과 같이 사업실행에 직접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정기적으로 다과 등의 간식을 구입해야 경우에는 소모성물품 구입비용으로 편성 가능
	국 내 여 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모임구성원의 타 시·도 방문 등에 필요한 경비(정액) * 시내 4시간 미만 : 10,000원 / 1인, 1일 (교통비 등 활동경비) * 시내 4시간 이상 : 20,000원 / 1인, 1일 (교통비, 식비 등 활동경비) * 시외 : 20,000원 / 1인, 1일 (교통비, 식비 등 활동경비) * 집행한도액 : 1회 활동당 2인 이내 집행 가능 * 여비 외 교통비, 통행료, 식비를 별도로 집행 불가 * 여행자 보험금은 자부담으로 집행
시 설 비	시설(공사)비 ※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만 편성 가능	• 사업 실행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개선,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등 비용(실비) *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불가 * 예산집행 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전컨설팅 필수 * 사업 전후 사진 및 견적서(3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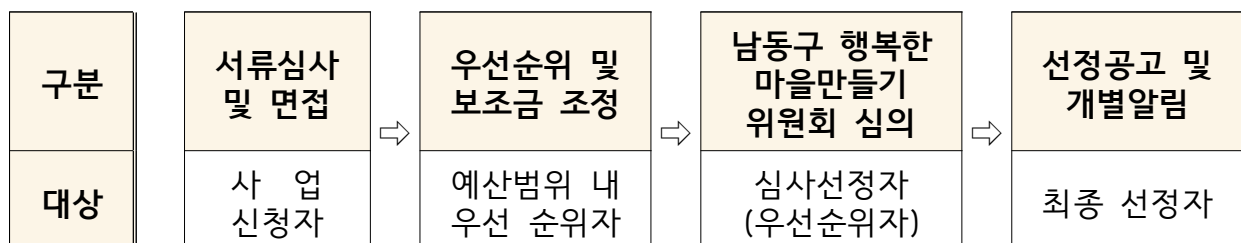
※ 보조금 집행은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주류 구입 포함), 위생업종(미용실,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오락실 등) 등

※ 단순 선심성·시혜적 사업으로 물품·식품 등 구입 후 재교부 목적으로는 지출 불가

6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기본 선정절차



○ 주요 심사원칙

-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공모 분야별로 진행하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점수를 산정하여, 산정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공고함

- 1차 서류심사 결과로 자격이 미달되거나 신청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순위 선정에서 제외함
- 심사 중에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모임구성원 중 대표나 대표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주활동 임원(총무, 회계담당)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된 내용에 신청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있을 시 해당 사업자를 심사순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선정 결정이후 중도포기(자진포기 또는 자격박탈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최종 심사결과를 근거하여 차기 우선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함

○ 배점현황

기본 심사		
계	1차 심사(서류)	2차 심사(면접)
100점	30점	70점

○ 심사방법

유 형	심사방법
마을공동체 형성	◦ 서류심사 (30%) ◦ 면접심사 (70%)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을 쓰다	
마을가꾸기	
마을활동가	

○ 심사기준

유 형	심 사 기 준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 사업 이해도	-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 주민 수요 반영 및 주민참여 가능성, 공익성
	• 실현 가능성	- 계획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활동 역량 - 계획의 추진(실행) 가능성
	• 예산 적합성	- 사업목적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지속성 및 확장성	- 사업(활동)의 지속 가능성 - 공동체 간 연대, 주민자치 등 공적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마을을 쓰다	• 사업 이해도	-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 주민 수요 반영 및 공익성
	• 실현 가능성	- 계획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활동 역량 - 계획의 추진(실행) 가능성
	• 전문성	- 홍보물, 발간물 발행 경력 - 마을 기록의 목적 및 취재 의지
	• 확장성	- 마을책자의 확장 가능성, 홍보성
마을가꾸기	• 사업 이해도	- 공모사업의 목적과 취지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 주민 수요 반영 및 주민참여도, 공익성
	• 실현 가능성	- 계획 및 추진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활동 역량 - 계획의 추진(실행) 가능성
	• 효과성 및 적합성	- 사업목적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 주민 수혜 및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 -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창의성 및 지속가능성	- 마을 고유의 지역자원·문화·지리적 특성의 발굴 및 활동 정도 - 사업(활동)의 지속 가능성
마을활동가	• 사업 이해도	- 공모사업 지원 활동가로서의 역할 이해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 활동의지	-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 의식
	• 전문성	- 마을 활동경력의 다양성 - 마을활동 분야 지식 습득 정도
	• 활동가 의식	- 남동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에 대한 비전 - 활동가로서의 비전 - 기초센터와 활동가의 협력 방안

7 선정결과 공고

가. 공 고 일 : 2023. 3. 24.(금) 이후

* 남동구 행복한 마을만들기 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 선정 모임(단체)별 개별 연락 예정

8 사전 유의사항

사업 신청시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함

- 서류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업신청은 자동 취소됨

나.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의‘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예산편성기준에서 벗어난 사업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후 지급함

다. 본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 내의 한 개의 해당 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 신청 및 신청자격 미달 시 자동으로 신청사항 모두 취소됨

라. 본 공모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직접’마을활동을‘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모임 구성원이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모임 구성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대리작성 또는 사업실행 시 사업선정은 자동 취소됨

바. 본 공모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득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사업신청서 작성시 상기“ ③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가.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가 시·군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 분야의 공모 사업에 중복 선정되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본 공모사업의 선정 자격은 자동 상실됨

나.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남동구에서 안내하는 필수의무교육(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회계교육 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석대상자는 해당 모임 대표와 회계담당자임

- 의무교육 불참시 선정자격은 자동 상실됨

다.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회계교육」 이수 후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회계교육」주요내용

* 보조금 사용 및 관리 방법, 사업완료(정산) 보고 방법

- 본 지침을 어기고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라.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선정결과가 공고된 이후, 신청서와 동일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거주지역 세무서에 신청)과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마을활동가는 사업신청자 명의의 통장 제출

마.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사업추진 기간 중 담당공무원 및 마을활동가의 중간 사업 확인, 현장 확인 등의 공모사업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임구성원(대표, 임원 등)이 이에

대면하여야 함

바. 본 공모사업의 선정대상자는 보조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남동구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함(입간판, 현수막, 리플렛 등)

※ 문 의 처

○ 남동구 공모사업 담당자 (☎ 453-2205~6, yonghyeong@korea.kr)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2. 공동체 소개서 1부 (서식3)
3. 공동체 참여자 명단 1부 (서식4)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서식8)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식 2	2023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계획서
------	--------------------------

1. 사업명 :

2. 사업의 배경과 목적

-
-

3.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장소 :

※ 사업장소 및 참석자 현황 등 소개 (사진이나 지도 첨부)

3) 사업대상 :

※ 주요 사업대상의 범위와 특성 (계층, 연령대 등), 선정 이유, 인원수 등

4) 사업내용

5) 사진자료 (마을가꾸기 등 해당 시 10장 이내로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4. 세부 추진계획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별로 기술)

1) 세부 사업단위

① 세부 사업내용

○

○

② 사업기간 :

③ 사업장소 :

④ 참석대상 및 인원

⑤ 추진횟수 및 시간 :

⑥ 홍보 및 추진방법

○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유대관계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세부사업단위

① 세부 사업내용

○

○

② 사업기간 :

③ 사업장소 :

④ 참석대상 및 인원

⑤ 추진횟수 및 시간 :

⑥ 홍보 및 추진방법

○

3) 세부사업단위 ※ 이하 중략

5. 세부 추진 일정

일 정	세부 사업 제목	세부 추진 내용
2023. . ~ .		

6. 사업비 구성 및 산출내역

○ 총사업비 : _____ 천원 (보조금 _____ 천원, 자부담 _____ 천원)

○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비 목 명 (세부비목)	산출 근거	예산액	재 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80	530	250	
A사업 (예시)	소 계		145	145		
	인건비 (강사비)	○ 주강사수당 100,000원 × 1명 = 100,000원	100	100		
	사업진행비 (홍보비)	○ 현수막 제작 45,000원 × 1개 = 45,000원	45	45		
B사업 (예시)	소 계		635	385	250	
	사업진행비 (단기임차비)	○ 행사장 대관료 100,000원 × 1식 = 100,000원	100	100		
	사업진행비 (소모성물품구입비)	○ △△△ 구입비 5,000원 × 100개 = 500,000원	500	250	250	
	운영비 (활동비)	○ 회의 다과비 3,500원 × 10명 = 35,000원	35	35		
	소 계					

※ 공고문의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작성

서식 3	공동체 소개서
------	---------

단 체 명			
대표자명			
대표자 약력	* 대표자의 주요약력 및 소개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조직현황	구분	합계(회원 수)	사업참여자
	인원수		
구성연월일			
구성목적			
주요연혁			
주요 사업실적	* 년/월/일/활동 내역 순으로 대표적인 사업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서식 4	공동체 참여자 명단
------	------------

2023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신청 사업명 표기)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당 직무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간 사
3					회 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담당 직무는 참여 주민 개인별로 업무분장 하여 작성

서식 5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분야(마을활동가)

신청번호

2023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마을활동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주소	※ 도로명 주소 작성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E-mail)			
관련 교육 이수 경력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교육명		비고	

주요
활동
실적
(5건
이내
작성)

위와 같이 2023년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서식6)
2. 활동계획서 (서식7)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8)
4. (증빙자료) 관련 교육이수 자료, 마을 활동 실적 자료

서식 6	마을활동가 자기소개서
------	-------------

마을활동가 자기소개서

신청인 성명	
--------	--

※ 자율 작성

서식 7	공모사업 지원 활동계획서
------	---------------

마을활동가 활동계획서

신청인 성명	
--------	--

※ 자율 작성

서식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유형별 / 참여자 전원 제출)

☐ 마을공동체 형성 ☐ 마을공동체 활동 ☐ 마을을 쓰다 ☐ 마을가꾸기 ☐ 마을활동가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 대표자 약력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발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발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305호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0-102호(2020. 6. 18.)로 실시계획 인가된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8.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9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2. 9. ~ 2023. 2. 2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2713)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2023년도 제2회 수용재결신청사업 열람공고대상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	3	468.70	1,196,489,000	1	60,000			1,196,549,00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13, 이상엽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별지 제1목록]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23수용0006)

Page 1 / 1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6-10	대	대	151.6㎡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10 **동 **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2	"	"	"	"	"	"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60-6	대	대	169.7㎡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 **동 ***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5-40	대	대	147.4㎡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5-6 ***호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3필지				3인		2인	

사업시행자 조서(지 장 물)

[별지 제1목록]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1차)(23수용0006)

Page 1 / 1

수 용 지 장 물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6-10	나무	3주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10 ***동 ***호		
			싸리나무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건			1인		0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306호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0-102호(2020. 6. 18.)로 실시계획 인가된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8.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9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2. 9. ~ 2023. 2. 2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2713)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수용재결 신청사업 열람공고대상

(단위: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2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12	3,074,500			3,074,50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13,이상엽

사업시행자 조서(지 장 물)

[별지 제1목록]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로 1-5호선 도로개설공사(2차)(23수용0007)

Page 1 / 2

수 용 지 장 물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6-10	담장	13.4m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10 ***동 ***호		
2	"	"	블럭조 폴룸관 스틸그레이팅포함	16.2m				
3	"	"	나무	1주	"	"		
4	"	"	소나무	"				
5	"	"	나무	3주	"	"		
6	"	"	대추나무	"				
7	"	"	나무	3주	"	"		
8	"	"	매실나무	"				
9	"	"	나무	1주	"	"		
10	"	"	모과나무	"				
11	"	"	나무	3주	"	"		
12	"	"	단풍나무	"				
13	"	"	나무	1주	"	"		
14	"	"	주목	"				
15	"	"	나무	"	"	"		
16	"	"	개나리	"				
17	"	"	나무	"	"	"		
18	"	"	사철나무	"				
19	"	"	나무	2주	"	"		
20	"	"	싸리나무	"				
					소계(11)건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5-37	나무	2주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37 ***동 ***호 - 이하여백 -		
22			버드나무					
물건의 합계					2인		0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310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8.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 :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수정 : (안 제12조)
- 주민참여형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0조 ~ 제23조)
- 현행 법률에 맞도록 수정 :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홍보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42, FAX 453-21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 :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수정 : (안 제12조)
- 주민참여형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0조 ~ 제23조)
- 현행 법률에 맞도록 수정 : (안 제3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란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블로그 기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소셜미디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민리포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원고료 지급)”을 “(원고료와 참여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소셜기자”를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로, “기자 활동”을 “활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소셜민원의 신청·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셜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이란 ----- -----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소셜기자”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	8. ----- ----- ----- -----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9. 10. (생 략)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 (생 략)

----- 사람으로 블로그 기자 등-----.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셜미디어-----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 략)

<신 설>

제21조(원고료 지급) (생 략)

<신 설>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주민리포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원고료와 참여수당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소셜기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콘
텐츠 기획회의 참석 등 오프라인
상의 기자 활동 참여 시 예산 범위
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
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

① (생략)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
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변상) ----- 소셜기
자 및 주민리포터 -----

 --- 활동 -----

 -----.

제2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
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
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
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소셜민원의 신청·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
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
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고시 제2023-18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기존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3호 저목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차 충전소’)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2. 7.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 및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 . 광역시도 간선도로변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하는 기준을 말한다.
2. “허가권자”란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치계획」은【별표 1】과 같다.

제4조(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기준

- 가.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제3호저목 가) 및 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9항 및「시행령」제22조 별표2의 규정 중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 신청지는 당해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나 우량농지를 포함한 부지는 제외한다.
- 라.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 진 · 출입로 불허구간 등 기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 마.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인접도로(연접차도) 높이 기준 절 · 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300m이내 구간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 바.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 사.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최대 3천300제곱미터 이하, 최소 1천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본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허가(형질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아.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 1) 본 고시에 의한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 자.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② 시설기준

가. 공통사항

- 1)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전기차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 3) 충전소 1개소 당 충전 주차면수는 10면 이상 충전기 5대 이상으로 하고, 충전 주차면수 전체가 동시 충전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충전 주차면수의 50% 이상을 급속 충전(최대출력값 50킬로와트 이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주 시설 면적산정을 위한 충전주차면수는 충전기당 최대 2대까지 인정한다.

나. 세부기준

1) 주 시설 면적 산정기준

주 시설 면적의 범위는 전기차 충전 주차 구획¹⁾ 및 진 . 출입로²⁾로 한다.

[주 시설 면적 기준]

1) 충전주차구획 1면 : $3.3\text{m} \times 9\text{m} = 29.7\text{m}^2 \rightarrow 30\text{m}^2$

2) 진 . 출입로(2개소) : $3.5\text{m} \times 10\text{m} \times 2\text{개소} = 70\text{m}^2$

예시) 충전주차 10면일 경우 주 시설 면적

$$(30 \times 10\text{면}) + 70 = 370\text{m}^2$$

2) 부대시설 면적 산정기준

- 부대시설은 세차시설 및 사무실 . 화장실 . 대기실(소매점 등 판매시설 설치 및 판매행위 제외) . 창고 용도만을 허용하며, 부대시설 최대 면적은 주시설 면적의 100% 이하로 하여야 하되,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다음의 면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 ㎡)

구분	충전 주차면수						
	10면 (370㎡) ¹⁾	11면 (400㎡)	12면 (430㎡)	13면 (460㎡)	14면 (490㎡)	15면 (520㎡)	16면 (550㎡)
합계 ²⁾	90	93	96	99	102	105	108
사무실	20	20	20	20	20	20	20
화장실	30						
대기실	30	33	36	39	42	45	48
창고	10	10	10	10	10	10	10
구분	충전 주차면수						
	17면 (580㎡)	18면 (610㎡)	19면 (640㎡)	20면 (670㎡)	21면 (700㎡)	22면 (730㎡)	23면 (760㎡)
합계	111	114	117	135	138	141	144
사무실	20	20	20	30	30	30	30
화장실	30						
대기실	51	54	57	60	63	66	69
창고	10	10	10	15	15	15	15
구분	충전 주차면수						
	24면 (790㎡)	25면 (820㎡)	26면 (850㎡)	27면 (880㎡)	28면 (910㎡)	29면 (940㎡)	30면 (970㎡)
합계	147	150	153	156	159	162	180
사무실	30	30	30	30	30	30	40
화장실	30						
대기실	72	75	78	81	84	87	90
창고	15	15	15	15	15	15	20

주 1) ()는 주 시설 최대면적이며, 부대시설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2)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 외 추가 설치되는 주차면 및 충전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충전 주차면수 대비 토지형질변경 최대면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충전 주차면수 대비 토지형질변경 최대면적 기준]

충전 주차면수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형질변경 면적(㎡)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충전 주차면수	16면	17면	18면	19면	20면 이상	비 고
형질변경 면적(㎡)	2,500	2,700	2,900	3,100	3,300	

③ 건축 및 시설배치 기준

- 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 . 높이 . 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 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지붕(캐노피)을 설치 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 건폐율 산정 시 반영한다.
- 다. 부설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구획은「주차장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라. 충전기 위치는 전기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충전 주차면에 충전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톱퍼와 충전기 보호시설(볼라드)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는 충전시설을 가급적 전면부에 배치하고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간선도로변 도로경관 위해요소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면부에 충전소 식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5조(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관련 기준)

① 신청자 기준

- 가.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
- 나.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제6조(타 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률」, 「인천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조례」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용도변경금지 등)

1. 이 고시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전기차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명의변경 금지)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기타)

1.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남동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배치계획의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이 고시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남동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전기차 충전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배치계획

※ 배치기준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인접도로(연접차도) 높이기준 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 설치 지역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300m 이내 구간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붙임 1】

【전기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것	해당 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검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通行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通行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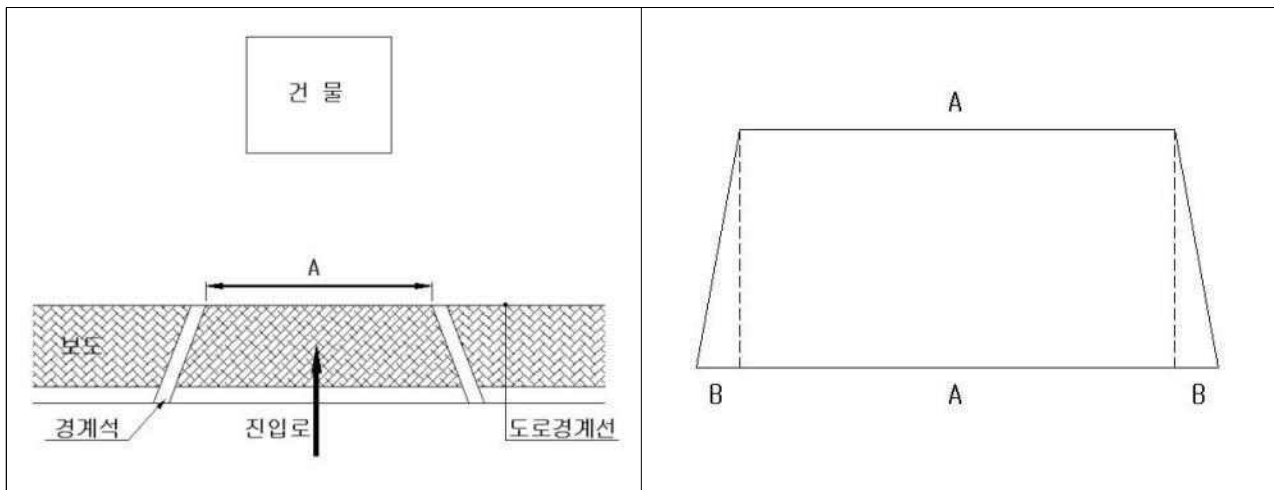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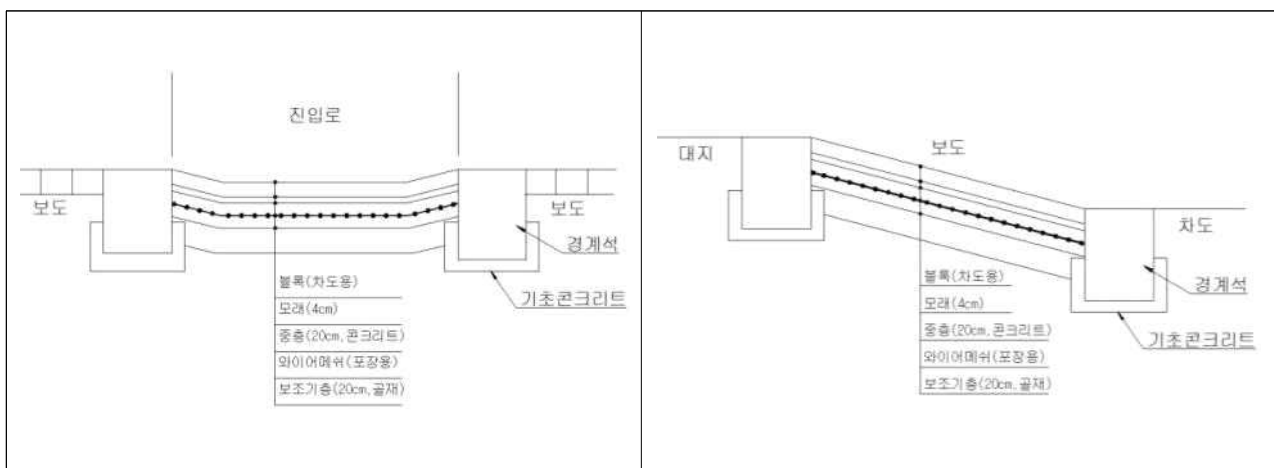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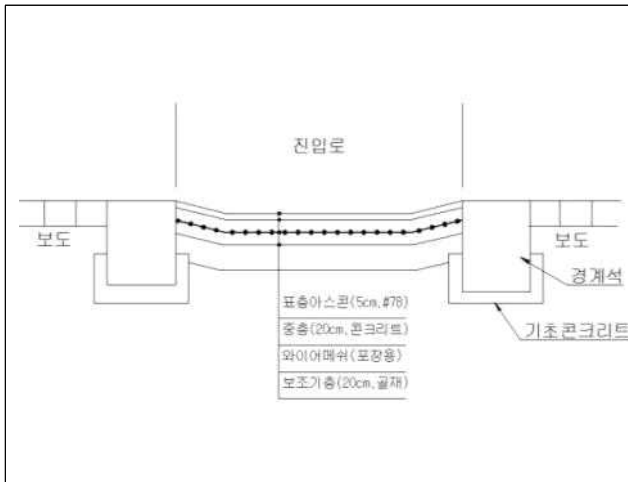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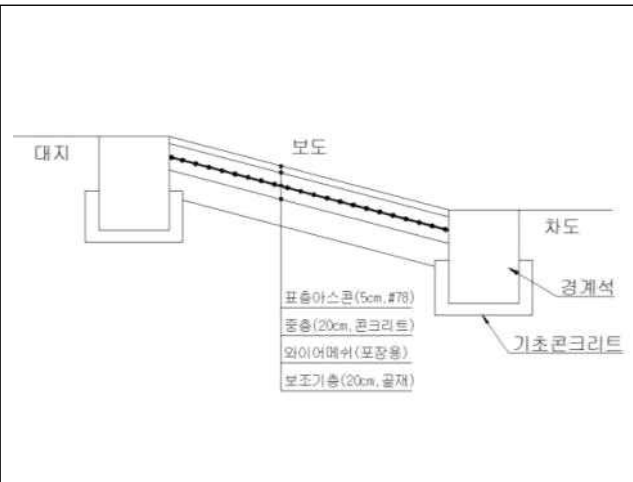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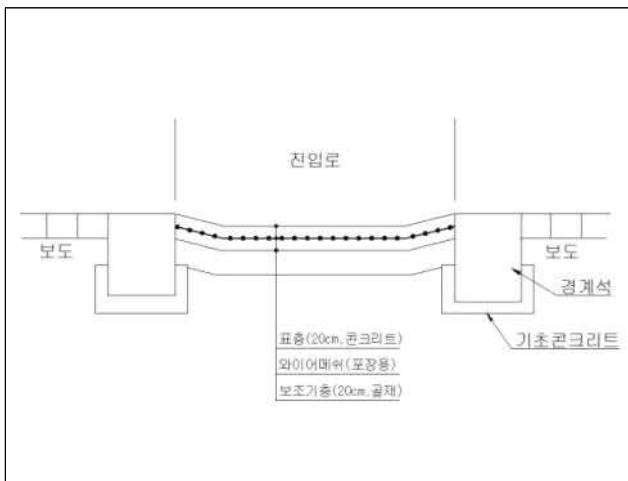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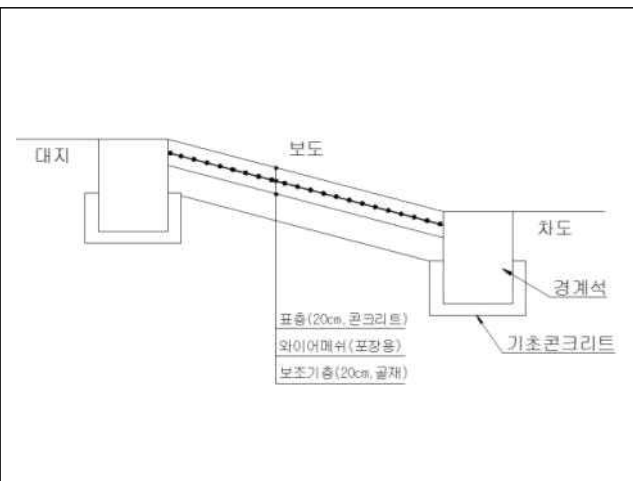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